

감 사 위 원 회

주의요구 및 통보

제 목 동네 뒷산 공원시설물 시공 부적정

관 계 기 관 도봉구

내 용

도봉구(공원녹지과, 이하 ‘발주자’라 한다)에서는 Y기업(이하 ‘시공자’라 한다)와 2017. 12. 13.부터 2018. 11. 30.까지 “2017년 동네뒷산 공원화사업”을 완료하는 것으로 계약(금액 549백만원)을 맺어 시행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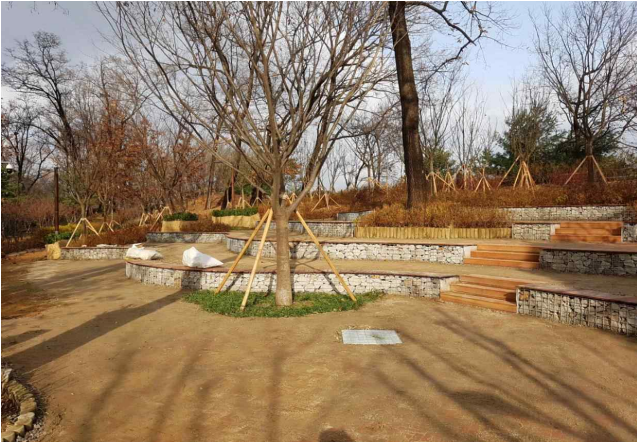
이건 공사 「시방서」 제1장 1.8(시공계획의 변경) 및 「설계도서」에 따르면 발주자(공사감독자)는 현장상태가 설계도서와 다를 경우 수급인에게 설계변경 요청을 지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담화숲 공원시설물로 앓음벽 78m, 개비온¹³⁾ 옹벽 32m를 시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473호, 2015.6.30. 이하 ‘국토교통부 지침’이라 한다) 제10조(시공자의 기본업무) 제3항 제1호, 제162조(준공검사 등의 절차) 제1항에 따르면, 시공자는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장작업, 시공방법에 대하여 품질과 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도록 되어 있고, 발주자(공사감독자)는 공사가 준공된 때에는 준공검사 전에 충분한 기간을 두고 공사현장을 정밀히 확인·점검하여 지적사항을 미리 시정조치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시공자는 아래 [그림 1] 과 같이 설계도서와 다르게 앓음벽 65m(감 13m), 개비온 옹벽 21m(감 11m)로 임의 시공하였고, 시공물량 변경에 따른 설계 변경 요청을 하지 않았다.

13) 개비온(Gabion) 옹벽: 아연도금철선을 꼬아 벌집모양으로 제작한 철망태를 상자형으로 조립한 후 내부공간에 깬 돌 또는 조약돌을 채워 조립하는 환경 친화적인 구조물

〔그림 1〕 담화숲 시설물(앉음벽, 개비온 옹벽) 시공 현황



▲ 앉음벽 현황(설계 78m→ 실제 65m, 감 13m)



▲ 개비온 옹벽 현황(설계 32m→ 실제 21m, 감 11m)

그리고 발주자(공사감독자)는 2018. 12. 7. 감사 당일까지 앉음벽, 개비온 옹벽 등의 시설물이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 확인·점검하지 않았으며, 2018. 11. 30. 준공기한 이전에 시공자에게 시공물량 변경에 따른 설계변경 요청을 지시하지 않는 등 공사감독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그 결과 시공자가 앉음벽, 개비온 옹벽을 설계도서에 미달되게 시공하고, 발주자(공사감독자)가 이에 대한 확인·점검 없이 준공하려 함으로써 공사비 13,531천원을 낭비 할 우려가 있었다.

따라서 시공자의 시설물(앉음벽, 개비온 옹벽) 임의변경 시공 행위는 국토교통부 지침 제10조 제3항 제1호에 위반된 것으로 「건설기술 진흥법」 제24조(건설기술자의 업무정지 등)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건설기술자에 대한 시정지시 등) 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한다.

그리고 발주자(공사감독자)의 공사 준공검사 시 현장 확인·점검 소홀 행위는 지방서 및 국토교통부 지침 제162조 제1항에 위반된 것이다.

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결과

도봉구(공원녹지과)에서는 설계도서와 다르게 시공한 사항과 이에 대한 공사 감독을 소홀히 한 사실을 인정하고 2018.12.14. 준공시 미시공된 수량(앉음벽 13m, 개비온 옹벽 11m)을 반영하여 감액완료(13,531천원) 하였다고 답변하였다.

조치할 사항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은

①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교육 및 업무처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라며, 관련자에게는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② 담화숲 시설물(얇음벽, 개비온 옹벽)을 임의변경 시공한 시공사(소속 해당 건설 기술자)에 대하여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2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주의’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통보)